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2026. 9. 22.

순 서

I. 추진배경 및 현황	1
1. 추진배경	1
2. 사회연대경제기업 현황	2
II. 목표 및 추진과제	4
III. 세부 추진 과제	5
1.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5
2.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6
3. 글로벌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7
4. 법·제도적 기반 정비	8
IV. 추진일정	9

I. 추진배경 및 현황

1. 추진배경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중요성

-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폭넓게 기여*

* (UN, 2023)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회연대경제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식 인정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은 이윤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계

-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도 고용, 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우수한 사회연대경제 사례 존재

<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수사례 >

베어베터 (사회적기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 (인쇄, 커피, 베이커리 등) - 기업성장 : '12년 7천만원 → '24년 159억원 - 사회적가치 : 발달장애인 고용 '12년 5명 → '26년 290여명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 지역 특산물 고들빼기를 활용해 김치 등 다양한 제품 생산·판매 - 기업성장 : '16년 8,500만원 → '25년 8.2억원 (연평균 28.7% 고성장) - 사회적가치 : 지역 주민을 채용하며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
英, Belu	- 호텔, 외식업 등을 대상으로 음료와 정수 시스템을 판매하며, '11년부터 순이익 전액을 WaterAid에 기부 (깨끗한 물, 위생시설 사업) - 기업성장 : '11년 246만 파운드 → '23년 890만 파운드 (3.6배 성장) - 사회적가치 : 650만 파운드 이상 기부, 43.5만명 삶에 영향

⇒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역할을 넘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6.30, 관계부처 합동)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및 경쟁력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포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22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창업, 경영 및 기술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업 스케일업 방안 마련

- 현재는 기업의 성장역량과 무관하게 조직유형·목적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 소관 부처별로 지원
- 사회연대경제 기업 유형은 중첩적이며*, 각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

* 예시 : (자바르떼 - 소외계층 문화예술공연)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라잇루트 - 폐전지로 업사이클링 원단제조) 소셜벤처 + 사회적기업

⇒ 부처별 육성중인 사회연대경제기업 중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 필요

2. 사회연대경제기업 현황

□ 사회연대경제기업 정의 및 유형

- (정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
- 이윤 중심의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 (유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5대 핵심 주체와 개별법에 따른 8개 협동조합

□ 유형별 주요 현황

- 목적에 따라 각 부처가 운영하는 판별(소셜벤처), 인증(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신고(협동조합), 지정(마을기업) 기반으로 관리

< 사회연대경제기업 주요 현황 ('24년 기준) >

구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소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중소벤처기업부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07.시행)	「마을기업법」 (‘26.8.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00년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12년 시행)	「벤처기업법」 (‘21년 법적 근거 마련)
목적·정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주민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 창출	저소득 실업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조합원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결성	혁신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
제도	인증	지정	인증	신고	판별
개수	3,762개	1,726개	962개	26,539개	2,504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 중기부), 농업협동조합(농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해수부), 신용협동조합(금융위),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연연초협동조합(재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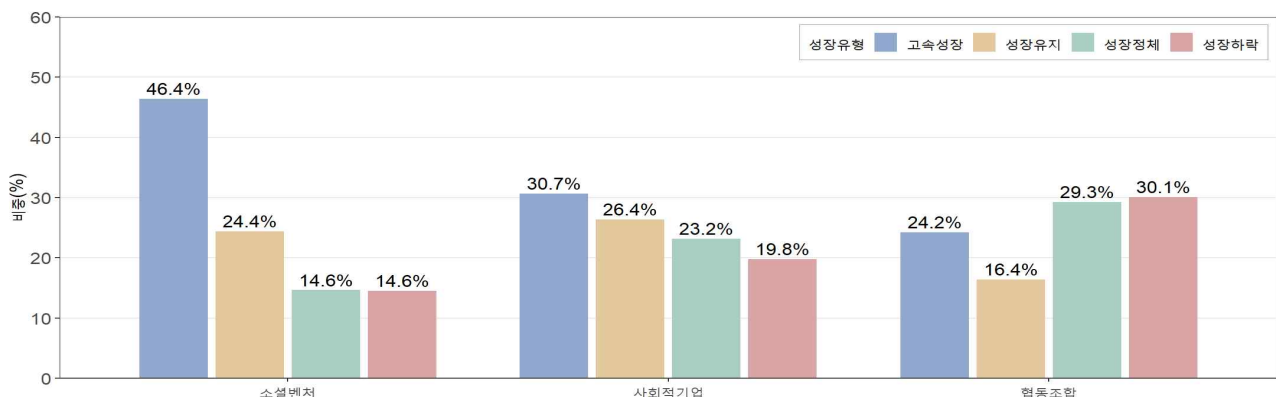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성

-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
- 최근 3년 매출 또는 고용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 고속성장(20% ↑)·성장유지(5%~20%) 유형이 절반 이상(53.4%) 해당

* 일반중소기업 중 고속성장·성장유지 비중 55%(‘24년말 중소기업기본통계 기준)

- ‘고속성장’은 전체의 3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조직유형별 고속성장 비중은 소셜벤처(46.4%), 사회적기업(30.7%), 협동조합(24.2%) 순

< 사회연대경제 기업별 성장유형 분포 >



※ SIMS 기준 '26.1월말 활동 중인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최근 3년('21년~'24년) 연평균 매출액 또는 고용 증가율

II.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성장성 갖춘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모델 확산
추진 과제	1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 기업 성장 단계별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 · (초기) 초기창업패키지 사회연대경제 Track 신설 · (도약) 사회연대경제기업 TIPS 10% 우선 할당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개최 ◆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2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 임팩트 펀드와 보증 지속 공급 ◆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 3 국내·외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 컴업 연계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행사 개최 ◆ 대기업·사회연대경제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4 법·제도적 거버넌스 정비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하여 중소기업 간주 사회연대경제기업 범위 확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관으로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반 구축 ◆ 소셜벤처기업 개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강화

III. 세부 추진과제

1.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① 창업 초기부터 도약까지 스케일업 지원

-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스케일업 지원

<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

창업 초기 단계		도약 단계	
초기창업패키지 사회연대경제기업 Track 신설('27)	▪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 초기투자 등 지원	TIPS 10% 할당 (‘26~)	▪ 사업화자금(최대 3억원) ▪ R&D자금 (8억원)

※ (예비창업) 모두의 창업을 통해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지원

① (초기) 창업 3년 미만 초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 뒷받침

-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설 ('27~)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등 최대 1억원

** (창업 프로그램) 시장진입, 초기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운영

② (도약)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TIPS 우선할당 및 R&D 지원

- 기후테크(E), 소셜벤처(S)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ESG 분야 기업을 전체 틱스 기업 중 10% 우선 할당 ('26~)



▪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평가 배점이 낮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소셜벤처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② 대국민 오디션 개최로 소셜벤처 발굴·육성

- (목적) 소셜벤처 리그를 개최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 (내용) '26.8월 BM 고도화(100개사, 기업당 200만원) → '11월 사업화 멘토링(40개사, 기업당 500만원) → '12월 대국민 발표(10개사, 최대 1.5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3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협업 활성화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에 수반되는 협업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화 자금, 인건비 등을 지원 ('26. 88개사)
 - 소상공인들 간의 연대·규모화 촉진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생산·판매 등 협업화 촉진 ('26. 80개사)
- * 사회적기업 등 다른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 우대

2.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1 임팩트 펀드와 보증 지속 공급

- (임팩트 펀드) 모태펀드를 통해 임팩트 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성장형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 공급 ('26. 367억원 조성 목표)
 - * ('18~'25년) 모태펀드 2,080억원 출자 → 3,182억원 규모 펀드 조성 (255개 기업 투자)
 - (* '26년) 100억원 출자 → 367억원 조성, ('27년) 모태펀드 100억원 출자 목표
- (임팩트 보증) '26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 안정적 지원
 - * ('18~'25년) 1,794개사 대상 1조원 규모 보증 공급 (연 평균 1,250억원 내외)
 - (* '26~'30년) 매년 1,500억원 이상 임팩트 보증 지원 목표

2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 소진기금 內 사회연대경제기업 전용자금 신설 ('26. 200억원)
 - * ('26년) 전용자금 200억원 신설 → ('27년) 200억원 규모 공급 목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별 주요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신보 사회연대경제 특례보증 지원 ('26. 675억원*)
 - * 기존 자체재원 300억원 보증 + 확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약으로 375억원 보증



-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지역성, 공동체성 등을 함께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경쟁하기보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

-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판로 개척 지원 ('28~)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59개 ('26.8월 기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1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7)

* 우선구매 기준 및 목표치 마련('27.3월) 이후 선도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진행한 공공기관에게는 연말 공공구매 유공 포상에 가점 부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등에 사회연대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반영

3. 글로벌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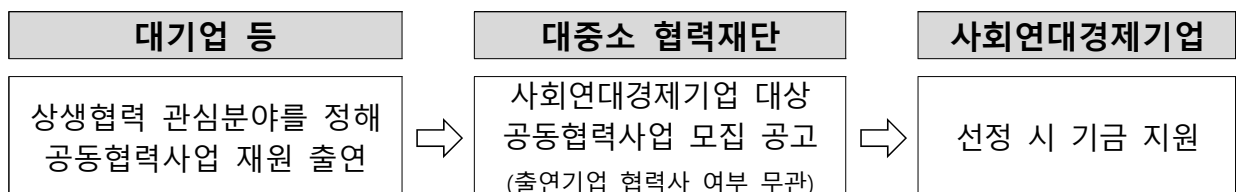
1 컴업 연계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 가칭 아시아 임팩트 대화 개최 ('26.12)
 -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네트워크로 구성된 글로벌 협의체(GSEF*)와 협업하여 아시아 지역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마련
- * 국제사회연대경제협의체 (Global Forum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및 사회연대경제 기업(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임팩트 피칭 및 전시 부스 운영

2 대기업 · 사회연대경제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 대기업 등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 공동협력사업*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 ('26.下)

* 출연기업이 협력 분야를 제안하고 출연기업과의 협력관계에 무관하게 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AX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별 맞춤 지원사업 확대 추진

4. 법·제도적 기반 정비

1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확대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일반 중소기업 외에도 사회적기업(‘11), 협동조합(‘14), 소비자생협(‘18)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간주
- (확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간주대상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으로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6.9.3)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관으로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반 구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수단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26.11)
- 민·관 협의체를 통해 생협의 제2차 발전계획*(‘27~‘29)을 마련하고, 생산자 협동조합과 통합하여 협동조합 지원 체계 구축

* 1차 발전계획(‘24~‘26, 공정위)을 토대로 기존과제 개선, 신규과제 발굴

3 소셜벤처 개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강화

- (개별법 제정) 소셜벤처의 목적, 개념, 기준과 지원 근거 등을 규율하는 「^{가칭}소셜벤처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26~)
 - 기본법의 사회연대경제기업 대부분이 개별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셜벤처는 벤처기업법의 일부(제16조의10)로 규율 중
- (개념 재정비)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ESG,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PRI*(책임투자원칙) 등 국제 기준과 부합하도록 재정립(‘26~)
 - 소셜벤처 사회적가치 평가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자 적합성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자생력 제고
- (투자 기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소셜벤처 기업을 추가(벤처투자법 개정, ‘26~)

* (현행 주목적 투자대상) 창업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IV.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및 연대 강화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초기창업패키지 전용 트랙 신설	'27 ~
사회적 가치 창출기업에 TIPS 우선할당 및 R&D 지원	'26 ~
「모두의 창업 소셜벤처 리그」 개최	'26 ~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화 촉진	'26 ~
◇ 자금 공급 및 판로 확대 지원	
임팩트 펀드 공급	'26 ~
임팩트 보증 5년간 매년 1,500억원 이상 지원	'26 ~
소진기금 내 사회연대경제 전용자금 신설	'26 ~
지역신보 사회연대경제 특례보증 공급	'26 ~
사회연대경제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운영	'28 ~
◇ 글로벌 네트워킹 및 상생협력 활성화	
컴업 연계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킹	'26.12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26.下
◇ 법·제도적 기반 정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확대	'26.下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관으로 협동조합 통합지원 기반 구축	'26.11~
소셜벤처 개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강화	'26 ~
벤처투자회사·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추가	'26 ~